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054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석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3. 3. 14.

판결 선고2023. 4.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3. 22. 접수 제1013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동공조설비시공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2. 28.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창원시 진해구 F 지상 공동주택신축공사 중 시스템에어컨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잔대금 4,8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8.경 소외 회사와 건축주 G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1907).

나. 원고는 위 소송 진행 중인 2017. 3. 2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남편인 C(이하 'C'라 한다)를 조정참가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및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 조항]

1. 소외 회사 및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되, 2017. 3. 24.까지 15,000,000원, 2017. 5. 30.까지 15,000,000원, 2017. 6. 30.까지 18,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와 C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하되, 그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위 소송 진행 중 2017. 5. 17. G과 사이에 'G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 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C로부터 2017. 3. 24. 15,000,000원, 2018. 3. 21. 15,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이를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고 나면 22,000,684원 및 이에 대한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마. 한편 C는 2019. 3. 22.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101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에게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H조합에 대한 약 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I은행에 대한 약 130,803,029원의 대출금 채무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무로 22,000,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18. 3. 21. C, G과 사이에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자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정하여진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이 성립한 이후 C는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하

별지